



즉시 배포용: 2019년 8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전면적 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에 서명

법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괴롭힘이 "심각한 또는 만연한" 경우라는 제한 삭제

모든 고용 계약서 기밀 유지 합의(Non-Disclosure Agreements, NDAs)에 고용인들이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지시

소송이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의 공소 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주지사의 2019년 여성 사법 어젠다(2019 Women's Justice Agenda)의 핵심 구성요소

Cuomo 주지사의 해당 법안 토론 동영상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면적인 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S.6577/A.8421)에 서명하여 Cuomo 주지사의 2019년 여성 사법 어젠다(2019 Women's Justice Agenda)의 핵심 구성요소를 이행했습니다. 본 법안은 뉴욕의 반차별 법안을 강화하여 "심각한 또는 만연한" 괴롭힘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삭제해 법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인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모든 기밀 유지 합의(non-disclosure agreements)에 고용인들이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제기한 소송의 공소 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직장 내 성희롱, 폭행 및 차별의 문화가 있었으며, 이제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심각한 또는 만연한' 직장 내 성희롱이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법적 기준을 삭제하고 더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종결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을 위한 평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문화를 바꾸고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성희롱을 근절하고 생존자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지원을 보장하는 뉴욕의 노력에 기반합니다. 뉴욕은 이러한 활동에서 국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여성 권리를 신장하고 완전한 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입니다."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 인권법(Human Rights Law) 아래 개정하여 고용인들이 고용주의 성희롱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심각한 또는 만연한" 행위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기준을 낮춤
- 고용 계약서의 모든 기밀 유지 합의서에 근로자는 여전히 주 정부 또는 지자체에 괴롭힘이나 차별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 정부 조사에 과정에서 증언하거나 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직원의 민원 제기 권리를 보호
-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에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소송의 공소 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고용주의 성희롱 예방 정책에 대한 통보를 영어 및 고용인의 주 언어로 제공해야 함
- 인권법(Human Rights Law)의 적용 범위를 뉴욕주 모든 고용주로 확대
- 직장 내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보호를 모든 계약자, 하도급 업자, 벤더, 상담가,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자들로 확대. 또한 가정부들에 대한 모든 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보호 확대
- 연방의 권리 역행과 무관하게 법원이 인권법(Human Rights Law)을 관대하게 해석하도록 요구
-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 중재 금지
- 인권법(Human Rights Law)을 집행하도록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의 권한 갱신
- 4년마다 직장 내 모든 유형의 차별 근절을 위해 최신 성희롱 방지법을 구축할 최선의 방법 연구 및 성희롱 정책에 대한 검토 요구

Alessandra Biaggi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8년, 전 입법부 직원들이 수년간 견딘 강력한 입법자들과 국가기관의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의 생존자들과 근로자들에게 그 힘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고용주들은 직장 내 모든 형태의 성희롱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며, 생존자들에게 고소를 제기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어 영광이며 이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노력해주신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다수당 대표와 **Andrew M.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운동을 법안으로 제정함으로써 뉴욕은 미국의 생존자들을 위한 희망의 불빛이 되었으며, 모두를 위한 괴롭힘 없는 뉴욕을 건설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Aravella Simota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주의 근로자들이 두려움 없는 일터를 자랑스럽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희롱과 폭력 없는 직장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하던 시대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 지침 일체에 서명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이를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뉴욕의 기준을 강화하게 됩니다. 직장을 개선하고 이 개혁을 우선 시행해야 할 위급성을 이해해주신 Cuomo 주지사, Biaggi 상원의원. 입법부의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지사는 이 전면적인 개혁을 2019 여성 사법 어젠다(2019 Women's Justice Agenda)의 일부로 처음 제안했으며, 회계연도 2020 행정부 예산(FY 2020 Executive Budget)에서 다시 제안하였습니다. 입법부는 이 계획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입법 심의회가 11일 남은 상황에서 주지사는 여성 사법 어젠다: 지금이 기회(Women's Justice Agenda)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입법부에 괴롭힘이 심각하거나 만연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폐기하고, 입법 심의회 종결 전에 기타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뉴욕주는 성희롱 퇴치에 있어 국가적 리더이며, 지난해 Cuomo 주지사는 회계연도 2019 예산(FY 2019 budget)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성희롱 방지 종합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종합 법안은 계약자, 하도급 업자, 벤더, 상담가, 기타 직장 내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도록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성추행 예방 정책 및 훈련을 채택하고 2019년 1월 자로 모든 주 계약자들이 성추행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모든 직원을 훈련시킨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종합 법안을 기반으로 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더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